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기 금

2025.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유 인 규

목 차

개 요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	---

일반 회 계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7
---------------------	---

II. 검토의견

1. 신용보증기금출연(1231-881)	9
(1)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등	10
2. 기술보증기금출연(1231-882)	13
(1) 신속한 유동성 공급 및 리스크 관리 필요	14
3.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20
(1) 추경 편성 요건을 고려한 사업집행 관리 철저 필요	21
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2134-302)	26
(1) 하반기 추진 과제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27
5.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	30
(1) 연도 내 집행을 통한 추경편성 효과 적기달성 필요 등	31
6.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3133-301)	37
(1) 추경편성 효과 조기달성 노력 필요	38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I.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45

II. 검토의견

1.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261-302) 47
 -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관리 철저 48
2.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1261-303) 52
 - (1)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집행관리 철저 등 53
3.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융자)(1261-314) 58
 - (1) 불확실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사 목적의 자금과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할 필요 5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I.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67

II. 검토의견

1. 지역신용보증재 단재보증(1234-303) 69
 - (1)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안정적 수행방안 마련 필요 70
2.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75
 -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한시): 조속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대규모 한시적 소액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필요 76
3.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 82
 - (1)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지원 신속하고 내실있는 집행 준비 필요 83

4.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	89
(1)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한 소비 활성화 효과 재검토 필요	90
(2) 상생페이백: 조속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소비 유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설계 필요	95

I.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개요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 및 산업 리스크 대응, 민생지원 등 대내외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2025년 4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국가재정법」 제89조¹⁾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2조원으로,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조 112억원임.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반회계 2,965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조 147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7,00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음.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정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12조원 규모로,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는 5조 112억원으로 4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2025년 한시)’ 사업에서 1조 5,66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소비 진작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페이백(2025년 한시)’ 사업을 신설하고 1조 3,7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구매력 확보를 위해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 사업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2025년 한시)’ 사업에 1,31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음.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에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334억원을 증액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으로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사업에 645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와 재기사업화를 위해 494억원을 편성하였음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사업으로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한시)’ 1,000억원을 편성하여 신설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수출 중소기업의 통관, 수출규제 등에 대한 종합지원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을 증액하였음.

AI 기술을 중소 제조기업이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ICT융합 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 167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고 R&D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R&D)’에 10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
	본예산 (당초)	추경 (변경)	본예산 (A)	추경안 (B)		
[일반회계]	945,618	945,618	1,053,677	1,350,224	296,547	28.1
신용보증기금출연 (1231-881)	80,000	80,000	-	100,000	100,000	순증
기술보증기금출연 (1231-882)	20,000	20,000	40,000	110,000	70,000	175.0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219,054	219,054	236,076	252,823	16,747	7.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2134-302)	423,205	423,205	567,983	577,983	10,000	1.8
수출지원기반활용 (3131-301)	111,860	111,860	127,560	217,360	89,800	70.4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3133-301)	91,499	91,499	82,058	92,058	10,000	12.2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39,370	469,370	632,450	1,332,450	700,000	110.7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1261-302)	150,000	235,000	250,000	750,000	500,000	2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융자)(1261-303)	189,370	234,370	382,450	482,450	100,000	26.1
통상리스크대응긴급 자금(한시, 융자) (1261-314)	-	-	-	100,000	100,000	순증
[소상공인시장진흥 기금]	4,716,956	4,716,956	4,986,036	9,000,697	4,014,661	80.5
지역신용보증재단재 보증(1234-303)	125,354	125,354	210,940	544,377	333,437	158.1
소상공인성장지원 (4131-317)	292,498	279,212	265,085	1,962,421	1,697,336	640.3
소상공인재기지원 (4131-319)	166,308	179,594	274,806	324,194	49,388	18.0
소상공인지원(융자) (4151-301)	3,710,000	3,710,000	3,770,000	4,270,000	500,000	13.3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154-304)	422,796	422,796	465,205	1,899,705	1,434,500	308.4

주: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는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5조 112억원(32.9%) 증가한 20조 2,600억원임.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총지출 기준 본예산(3조 342억원) 대비 2,965억원(9.3%) 증가한 3조 4,832억원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총지출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B-A)	%
합계	149,497	152,209	152,488	202,600	50,112	32.9
일반회계	30,342	30,342	31,867	34,832	2,965	9.3

주요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출연 1,000억원, 기술보증기금출연 700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167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R&D) 100억원, 수출지원기반활용 898억원,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10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됨.

2025년 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일반회계]	3,034,226	3,034,226	3,186,688	3,483,235	296,547	9.3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80,000	-	100,000	100,000	순증
기술보증기금출연	20,000	20,000	40,000	110,000	70,000	175.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확산	219,054	219,054	236,076	252,823	16,747	7.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423,205	423,205	567,983	577,983	10,000	1.8
수출지원기반활용	111,860	111,860	127,560	217,360	89,800	70.4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1,499	91,499	82,058	92,058	10,000	12.2

주: 총지출 기준

Ⅱ. 검토의견

1. 신용보증기금출연(1231-881)

□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신용보증기금출연’(1976~, 출연)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²⁾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³⁾하는 사업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로 1,00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출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80,000	-	100,000	100,000	순증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80,000	80,000	-	-	-	-
위기대응 특례보증	-	-	-	100,000	100,000	순증

2)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3)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보증지원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고,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됨.

□ 검토의견

(1)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등

동 사업 중 ‘위기대응 특례보증’ 내역사업은 관세 피해, 내수 침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하여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ex, 관세 피해기업⁴⁾, 산불·수해 등 재난 피해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로 1,00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위기대응 특례보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안	세부내역
위기대응 특례보증	100,000	(출연금 1,000억원 + 자체자금 1,400억원) × 보증배수 12.5배 ÷ 보증비율 90% = 보증부대출 3.3조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번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시중은행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에 대해 90% 보증비율로 보증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3조 3,000억원의 보증부대출 공급에 필요한 재원 2,400억원 중 1,000억원(보증배수 12.5배, 보증비율 90%)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함⁵⁾.

4)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등(수출실적이 감소하거나,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등이 감소한 기업)

5)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조건(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 (보증비율) 90% (통상 85% 대비 우대)
- (보증료율) 최대 0.5%p 우대 (큰 폭의 보증료 차감 혜택, 통상 보증료율 1% 이상)
- (보증한도) 5억원 (통상 3억원 대비 상향) * 향후 기업 수요에 따라 한도 인상 등 추가 검토
- (기타) 심사절차 간소화하여 신속 자금지원 * 보증금액에 따라 강화되는 내부심사절차 완화

이번 특례보증 조치는 관세 피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최대 3조 3,000억원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기업 부실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추가 재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출연’ 예산안(정부안 400억원)에 대한 우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이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어 재무구조가 건전한 계정의 잔여 재원을 활용하여 당시 편성된 예산 소요를 충당하거나 신용보증기금의 자구노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출연’을 위해 정부안에 편성된 40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

‘위기대응 특례보증’ 목적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1,000억원에 대하여도 재무구조가 건전한 계정의 잔여 재원을 활용하여 예산 소요를 충당하도록 하거나 자구노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⁶⁾.

둘째, 관세 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증가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전반의 부실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6)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자체자금 1,400억원을 동 내역사업 추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함.

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즉,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시기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부실률⁷⁾이 3.9%까지 높게 나타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관세 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려는 경우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하여 부실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연도별 부실률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기업(%)	3.9	2.7	2.4	1.9	2.1	3.2	2.9
일반보증(%)	3.6	3.3	2.4	2.0	2.0	3.3	3.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셋째, 2025년 4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에 관한 은행연합회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신용보증기금의 위험 부담률을 의미하는 보증비율(현 계획 90%⁸⁾) 및 세부 보증 부대출 조건 등을 조속히 협의·확정함으로써 ‘위기대응 특례보증’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목적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7) 부실률 = 당해연도 부실순증액 ÷ 당해연도 보증잔액 × 100

8)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을 95%로 설정한 바 있음.

2. 기술보증기금출연(1231-882)

□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기술보증기금출연’(1989~, 출연)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⁹⁾에 근거하여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00억원(175.0%) 증액한 1,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출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기술보증기금출연	20,000	20,000	40,000	110,000	70,000	175.0
위기기업 특례보증	-	-	-	70,000	70,000	순증

9)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 검토의견

(1) 신속한 유동성 공급 및 리스크 관리 필요

동 사업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국의 관세조치 등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등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기기업 특례보증’ 재원 7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임.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정부출연금 700억원에 기금의 자체재원 260억원을 합친 960억원을 재원으로 총 1조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진할 계획임.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출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
위기기업 특례보증	70,000	① 정부출연금 700억원 × 운용배수 12.5배 = 보증공급 8,750억원 ② 기금재원 260억원 × 운용배수 12.5배 = 보증공급 3,250억원 ①+② 총 보증공급액 1조 2,000억원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러한 특례보증은 관세조치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¹⁰⁾를 입은 우수 기술¹¹⁾ 수출기업, 직접 피해 기업과 거래하는 우수 기술 1,2차 협력기업 및 관세효과로 시장규모 확대 등이 예상되는 첨단기술 사업

10) 통상환경변화에 따라 수출감소, 수입비용 증가 등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11)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IP 사업화, 정부 R&D 성공판정 등 객관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이 인정되는 기업

영위 기업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위기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구 분	위 기 지 원		도 약 지 원
	Track1	Track2	Track3
지원대상	직접 피해기업	간접 피해기업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한 우수 기술 기업
	관세 피해 우수 기술 수출기업	직접피해기업과 거래하는 우수 기술 1,2차 협력기업	관세효과로 시장규모 확대 등이 예상되는 기회산업 영위기업
보증비율	85% → 95%*	85% → 90%	85% → 90%
보증료율	0.4%p 감면	0.3%p 감면	0.2%p 감면
심사완화	(산정특례) 같은 기업당 1억원 → 3억원 이하	(산정특례) 같은 기업당 1억원 → 2억원 이하	(산정우대) -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운전자금 산정한도 120% - IP가치평가를 통해 보증한도 추가 가산
	신속 지원을 위해 최근 1년 이내 기술사업평가 등급 보유시 기술평가 생략 가능		
관련산업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전자제품 제조 등		방산, 조선, 인공지능(AI), 양자, 로봇, 자율주행, 의약품 등

자료: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이 공급될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및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관세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망 기술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회복력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진되는 ‘위기기업 특례보증’의 집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기업에 유동성을 적기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례보증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보증공급 체계를 마련하여 계획된 보증공급이 연내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코로나19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서류 수집 등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바 있음.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잠정조치 시행

- (보증신청)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인터넷) 신청*
 - * 고객이 원할 경우 영업점 신청방식 선택 가능
- (조사자료)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가능한 자료*는 모두 기보에서 직접 수집하여 활용
 - *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특허등록원부, 주민등록초본 등
- (현장조사) 현장 체류시간 최소화 및 현장 조사 시 보증약정서 등 필요서류를 보완자료 등과 함께 일괄 접수
 - * 기술평가(조사) 기간을 4일에서 2일로 단축
- (보증심사) 보증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 심사 간소화
 - * 약식기술평가모형 적용, 기술평가등급요건 완화 등 ** 지역본부장 전결건도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 지원
- (보증약정) 채무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로서 대면 약정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과의 보증약정

자료: 기술보증기금

둘째, 최근 보증 사고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조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부실위험의 누적을 방지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2020년 4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5차례에 걸쳐 연장된 바 있고, 여기에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져 코로나19 기간 동안(2020~2022년)의 보증 사고율은 과거 대비 1~2%p 낮았음.

그러나, 최근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위기 지속과 경기침체 등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보증 사고율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최근 기술보증 잔액, 사고금액 및 사고율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3월
신규보증		52,859	52,465	48,480	78,208	49,276	42,638	60,957	55,156	13,202
보증잔액(A)		213,306	220,334	218,052	254,453	262,684	265,029	279,176	284,713	286,388
사고금액(B)		9,430	9,921	9,848	8,611	6,693	7,197	11,832	13,473	4,248
사고율	계획	4.8	4.8	4.8	4.8	4.5	4.8	4.0	4.6	4.9
	사고(B/A)	4.4	4.5	4.5	3.4	2.5	2.7	4.2	4.7	1.5
기본재산(C)		18,397	15,579	15,570	21,100	29,176	33,670	34,424	33,174	29,809
운용배수(A/C)		11.6	14.1	14.0	12.1	9.0	7.9	8.1	8.6	9.6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증사고율은 2.5%~3.4%였지만, 2024년 사고율은 4.7%로서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고치인 4.5%를 넘은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19 전·후 기술보증 사고율 비교

(단위: %)

구 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기간			코로나19 이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3월
사고율	4.4	4.5	4.5	3.4	2.5	2.7	4.2	4.7	1.5

주: 월말 사고금액은 누적 사고금액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금운용주체인 기술보증기금은 2025년 보증 사고율을 5% 이상(계획은 4.9%)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2025년 9월에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 복합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피보증기업 중 일부는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2025년 월간 기술보증 잔액, 사고금액 및 사고율

(단위: 억원, %)

구 분	1월	2월	3월
보증잔액(A)	284,078	284,527	286,388
사고금액(B)	1,593	2,832	4,248
사고율(B/A)	0.56	1.00	1.48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진되는 위기기업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의 누적 방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015~, 출연 및 보조)은 대내외 환경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조 중소·중견기업 대상 DX¹²⁾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7억 4,700만원(7.1%) 증액한 2,528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19,054	219,054	236,076	252,823	16,747	7.1
제조혁신구축지원	205,651	205,651	221,166	236,041	14,875	6.7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11,910	11,910	11,910	13,782	1,872	15.7
제조데이터 생태계구축	1,493	1,493	3,000	3,000	-	-

1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란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조직 문화,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함.

□ 검토의견

(1) 추경 편성 요건을 고려한 사업집행 관리 철저 필요

동 사업 중 ‘제조혁신 인프라조성’ 내역사업은 스마트제조 분야 솔루션의 클라우드화 전환 및 종합솔루션 개발·보급 확대¹³⁾를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클라우드화 지원대상 5개 컨소시엄을 9개 컨소시엄으로, 종합솔루션화 지원대상 1개 컨소시엄을 2개 컨소시엄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예산 대비 18억 7,200만원(15.7%) 증액한 137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제조혁신 인프라조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
제조혁신 인프라조성	13,782	가.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4,042백만원 · (클라우드화) 5개 컨소시엄 × 536백만원 × 50% + 4개 추가 컨소시엄 × 536백만원 × 50% = 2,412백만원 · (종합솔루션화) 1개 컨소시엄 × 1,660백만원 × 50% + 1개 추가 컨소시엄 × 1,600백만원 × 50% = 1,630백만원 나. (공급기업 역량진단) 1,000백만원 나.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8,74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13) 클라우드화 사업은 기존 중소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SW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솔루션(SaaS형) 형태로 개발 지원하는 과제임에 비해, 종합솔루션화는 업종별 대표 또는 생산공정에 적용가능하고, 사회·정책이슈 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통합된 종합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클라우드화 5개 과제, 종합솔루션화 1개 과제의 4월 현재 기준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4월 25일 마감 예정임.

2025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모집 공고

구 분	내 용
클라우드화 (5개 과제)	○ (신청자격) 공급기업이 주관(대표)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지원기간) 2025. 6 ~ 2026. 2 (8개월) ○ (지원규모) 총 12.5억원 (총 5개 과제, 과제당 2.5억원 이내 지원)
종합솔루션 (1개 과제)	○ (신청자격) 공급기업이 주관(대표)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지원기간) 2025. 6 ~ 2026. 6 (12개월) ○ (지원규모) 총 8억원 이내 (총 1개과제)

자료: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공고에 따르면, 클라우드화 5개 과제의 경우 2025년 4월 말 공고 마감 이후 5월까지 컨소시엄 선정을 완료하고, 2025년 6월부터 8개월간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또한, 종합솔루션 1개 과제의 경우 다수 제조솔루션 간 연계·통합을 도모하는 과제 특성상 이보다 긴 12개월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026년 6월까지 지원사업이 수행될 예정임.

이를 고려하면 추경 증액에 따라 추가된 클라우드화 4개 과제, 종합솔루션 1개 과제의 경우 기존 과제공고의 신청과제 중에서 추가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 등으로 과제 공고 및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증액분의 실질적인 집행이 2026년도 6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확정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지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정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과제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¹⁴⁾.

다음으로, 동 사업 중 ‘제조혁신 구축지원’ 내역사업은 한국 제조현실에 적합한 제조 혁신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전체

14)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클라우드화 및 종합솔루션 분야 과제의 지원단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지원기간 초기에 집행되는 특성이 있는 S/W 구입비를 제외하면 S/W 개발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공급기업 인력인건비, 기타 비용은 지원기간 전반에 걸쳐 비용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필요시 추경 예산에는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지원단가 소요분을 적정 반영하고, 향후 과제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계속과제비를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클라우드화 및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①클라우드화	②종합솔루션화	
S/W 개발비	260	1,020	
S/W 구입비	86	330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40	40	
공급기업 인력 인건비	80	120	
기타(관리·운영비용)*	70	150	네트워크 공사, 회계, 감리 비용 등
계	536	1,660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제조로봇 분야 50개 과제, 자동화 지원 분야 25개 과제 추가 수행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148억 7,500만원 (6.7%) 증액한 2,360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제조혁신 구축지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
제조혁신 구축지원	236,041	가. (정부일반형) 137,000백만원 나. (자율형공장) 12,000백만원 다. (상생형) 30,000백만원 라. (디지털협업공장) 7,541백만원 마. (제조로봇) 100개 × 500백만원 × 50% + 50개 과제 추가 × 500백만원 × 50% = 37,500백만원 바. (제조기반기업) 10,000백만원 · (전문기업 지정) 500개 × 0.58백만원 = 290백만원 · (자동화 지원) 75개 × 190백만원 × 50% + 25개 과제 추가 × 190백만원 × 50% = 9,500백만원 · (인력실태조사) 210백만원 사. (수준확인) 2,0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본예산에 반영된 제조로봇 분야 100개 과제, 제조기반기업 자동화 지원 분야 75개 과제의 과제 공고는 이미 2025년 1월에 진행·완료된 상황으로, 추경 편성에 따른 추가 과제 물량은 2025년 5월에 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하고, 7~8월에

최종 과제선정을 완료할 계획임. 동 계획에 따르면, 정상적인 과제 추진을 전제하더라도 과제수행에 따른 로봇 및 자동화 장비 등의 도입, 최종감리는 다음연도인 2026년 3월에서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특히, 제조로봇 분야 사업의 2024년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최종 지원기업 108개사 중 9개 과제가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25년 1분기까지 사업수행이 이루어진 바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중 하나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경 편성에 따른 과제 선정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2134-302)

□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1997~, 출연)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0억원(1.8%) 증액한 5,779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423,205	423,205	567,983	577,983	10,000	1.8
수출지향형	128,364	128,364	186,404	186,404	-	-
시장확대형	207,415	207,415	280,611	290,611	10,000	3.6
시장대응형	87,426	87,426	100,968	100,968	-	-

□ 검토의견

(1) 하반기 추진 과제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동 사업 중 ‘시장확대형’ 내역사업은 기술기반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혁신형 R&D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 방식으로 R&D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등을 수행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벤처캐피탈(VC) 추천에 따른 스케일업 팁스 신규과제 물량을 50개 추가 반영함에 따라 본예산 대비 100억원(3.6%) 증액한 2,906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시장확대형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
시장확대형	290,611	① 민간투자연계 : 156,750백만원 - 기업신청 : 14,341백만원 - VC추천 스케일업 팁스 : 136,617백만원 · (신규 상반기 과제) 30개 × 400백만원 × 9/12 = 9,000백만원 · (신규 하반기 과제) 72개 × 400백만원 × 4/12 = 9,616백만원 · (신규 하반기 과제) 50개 추가 × 400백만원 × 6/12 = 10,000백만원 · 계속과제비: 108,001백만원 - 글로벌 : 5,792백만원 ② 전략기술테마별프로젝트 : 16,800백만원 ③ 전략형 : 117,061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스케일업 팁스는 기술기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민간 벤처캐피탈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을 활용하여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

청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추천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R&D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본예산에 스케일업 팁스 신규 과제 총 102개에 해당하는 과제비를 반영한 바 있는데, 이 중 상반기 30개 과제에 대해서는 4월 과제협약 체결을 전제로 9개월분의 과제비를, 하반기 72개 과제에 대해서는 9월 과제협약 체결을 전제로 4개월분의 과제비를 반영하였음.

그런데 중소기업부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2025년 4월 7일에야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4월 20일 현재 기준 스케일업팁스 분야 신규과제 협약체결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면, 2025년 당초 계획했던 상반기 신규 과제 30개의 연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¹⁵⁾.

또한, 동 내역사업의 2024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부는 총 180개 민간투자연계형 신규 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35.6%에 달하는 64개 과제가 12월 1일에서야 협약이 체결되었음. 이에 따라, 2024년 신규 과제에 대해 교부된 과제비 326억 9,900만원 중 2024년 말 기준 연구수행자가 최종 집행한 금액은 195억 2,200

15) 이와 같은 공고 지연에 대하여 중소기업부는 2025년 글로벌 트랙 신설, 정부 매칭투자 구조 개선, 신규 운영사 참여 등 사업 주요 내용을 개편하기 위해 민간 대상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 전문가 토의, 내부검토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함.

만원(최종 집행률 59.7%)에 불과한 상황임.

2024년도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신규과제 추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협약 체결 시점	과제수	총 과제비 교부액 (A)	2024년 말 기준 최종 집행액 (B)	집행률 (B/A)
4.1.	13	3,705	3,151	85.0
5.1	8	2,280	1,962	86.1
6.1	13	3,705	3,034	81.9
7.1	26	5,225	4,440	85.0
9.1	26	3,990	2,766	69.3
10.1	10	1,520	1,007	66.3
11.1	20	3,040	1,164	38.3
12.1	64	9,234	1,999	21.6
합 계	180	32,699	19,522	59.7

주) 최종 집행액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최종 집행 실적을 의미함(2025년 2월까지 등록된 집행실적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에 편성된 신규 과제 물량 확대에 따른 세부적인 과제 집행관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벤처캐피탈(VC)과 과제관리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간의 R&D 과제관리를 위한 협력·연계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실제 교부된 과제비가 R&D 수행에 원활히 투입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5.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

□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수출지원기반활용’(1996~, 직접 및 보조)은 국제운송비, 법률자문, 컨설팅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15개 분야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¹⁶⁾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함)에 바우처를 제공하면, 참여기업이 온라인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구매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됨¹⁷⁾.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보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98억원(70.4%) 증액한 2,17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수출지원기반활용	111,860	111,860	127,560	217,360	89,800	70.4

16) 참여기업에 바우처(Voucher)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통해 수출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7) 당초 중소기업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14개 메뉴판으로 구성하여 제공하였으나, 최근 관세피해 대응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였음.

□ 검토의견

(1) 연도 내 집행을 통한 추경편성 효과 적기달성 필요 등

다음의 표는 동 사업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동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수출바우처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을 본예산(3,290개사) 대비 2,640개사 늘어난 총 5,930개사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2025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7,560	○ 일반수용비(210-01): 100백만원 - 수출바우처 신청 기업평가 및 간담회 등 개최 (100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68백만원 - 해외 수행기관 점검에 필요한 여비 (68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127,392백만원 - 내수·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u>수출바우처 보조금 (111,692백만원)</u> (3,290개사 × 50.2백만원 × 67.8%) -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한류 연관 산업 유망기업 수출바우처 연계지원(1,700백만원) (50개사 × 50.2백만원 × 67.8%) - 테크서비스기업 특화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보조금(14,000백만원) (400개사 × 50.2백만원 × 67.8%)	202,360	○ 일반수용비(210-01): 100백만원 - 수출바우처 신청 기업평가 및 간담회 등 개최 (100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68백만원 - 해외 수행기관 점검에 필요한 여비 (68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217,192백만원 - 내수·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u>수출바우처 보조금 (201,492백만원)</u> (5,930개사 × 50.2백만원 × 67.8%) -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한류 연관 산업 유망기업 수출바우처 연계지원(1,700백만원) (50개사 × 50.2백만원 × 67.8%) - 테크서비스기업 특화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보조금(14,000백만원) (400개사 × 50.2백만원 × 67.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장벽 등 무역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동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관세 피해(예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서비스(관세 컨설팅, 관세 분쟁 해결지원, 서류대행, 대체공급망 확보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 특화 지원 내용

지원 메뉴		지원 내용
관세 특화 (예시)	①관세 피해 컨설팅	·미 관세 조치에 따른 관세어로 긴급 해결 컨설팅 - 관세 조치에 따른 법률, 회계, 관세 등 심층 자문 - 대응방향 설정
	②관세 분쟁 해결지원	·현지 법률 전문가 등을 연계하여 부당한 관세 부과 및 분쟁 해결 지원
	③관세 분야 서류 대행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확인서, 관세환급, 인증신청, 통관절차 대행
	④대체 공급망 확보	·미국 수출 중단 대비 대체 공급망(신규 바이어) 발굴 연계 -바이어 추천, 신용조사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관세 피해(예상)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최근의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업성과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 그동안의 동 사업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참여기업의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2020년도 참여기업 13.9%, 2021년도 참여기업 24.5%, 2022년도 참여기업 5.8%, 2023년도 참여기업 3.5%, 2024년도 참여기업 6.9%로 각각 나타나, 최근연도(2022년도~2024년도) 지원성과가 2020년도 및 2021년도 지원성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20~2024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수출 증가율

(단위: 억불, %)

연도	직전연도 수출액 (A)	지원연도 수출액 (B)	수출액 증감분 (B-A)	수출 증가율 ((B-A)/A)
2020	39.2	44.7	5.5	13.9
2021	71.8	89.4	17.6	24.5
2022	85.3	90.2	4.9	5.8
2023	141.0	146.0	5.0	3.5
2024	53.9	57.6	3.7	6.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한편, 참여기업의 고용증가율을 살펴보면 2022년도 참여기업의 경우 5.1%, 2023년도 참여기업의 경우 2.9%, 2024년도 참여기업의 경우 4.2%로 나타나, 2020년도 참여기업 8.0%, 2021년도 참여기업 7.2%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2020~2024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고용 증가율

(단위: 명, %)

연도	직전연도 고용인원 (A)	지원연도 고용인원 (B)	고용 증감분 (B-A)	고용증가율 ((B-A)/A)
2020	85,669	92,540	6,871	8.0
2021	94,637	101,445	6,808	7.2
2022	88,609	93,134	4,525	5.1
2023	129,472	133,200	3,728	2.9
2024	88,547	92,260	3,713	4.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동 사업 지원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연도 내 사업예산의 실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사업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바우처를 발급하며, 참여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 범위 내에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사업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수행기관)에 바우처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복잡한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은 사업추진체계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회계연도를 초과한 사업추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일례로 2024년도 사업추진에서는 일부 참여기업(2차 모집 참여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9개월)로 설정되었으며, 2025년 4월 현재 모집 중인 2025년도 2차 참여기업의 사업수행기간도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11개월)로 계획되어 있음.

이처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참여기업 선정부터 바우처 정산대금 지급까지 총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추진실태에 비추어볼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추가적인 사업추진 역시 2025년도 이내에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¹⁸⁾.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가

18)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5월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7월 중 선정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함.

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취지가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 및 연도 내 바우처 사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¹⁹⁾.

19) 일례로, 바우처 사용기간을 추경예산 배정분에 한해 단기로 조정하거나, 사용잔액 인정 규모(현 85%)를 조정하는 등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3133-301)

□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1998~, 직접, 보조 및 출연)은 해외마케팅 능력 취약, 무역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0억원(12.2%) 증액한 920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1,499	91,499	82,058	92,058	10,000	12.2
해외수출규제 대응지원	15,300	15,300	15,300	25,300	10,000	65.4

□ 검토의견

(1) 추경편성 효과 조기달성 노력 필요

동 사업 중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舊‘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내역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비 및 인증비, 컨설팅비 등 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0억원(65.4%) 증액한 253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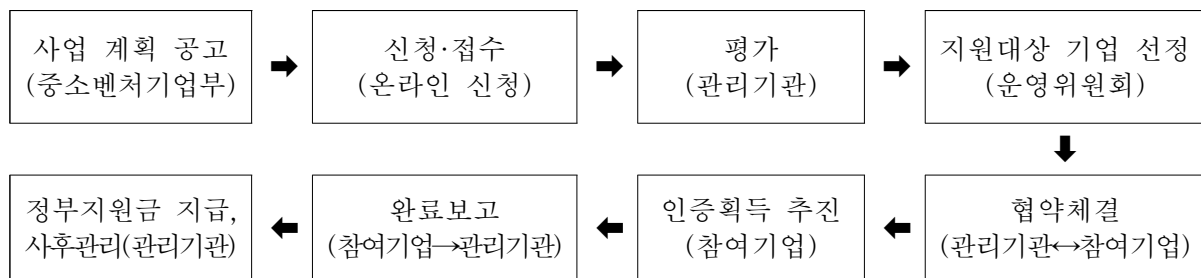
2025년 예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300	○ 630개사 × 40.5백만 × 60%	25,300	○ 910개사 × 42.3백만 × 6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장벽의 경우 ①관세와 ②비관세 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 사업의 경우 이 중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지원방안 중 하나라고 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고 신시장 개척을 촉진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함.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내역사업 예산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출연하여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부의 사업계획 수립·공고 이후 참여기업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관리기관)과의 협약체결,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지원금 지급 순으로 사업이 진행됨.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사업 추진절차



자료: 중소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로 전년도 매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임. 세부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기업당 지원한도는 1억원이고, 지원비율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참여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50%~70%) 적용되고 있음.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지원구분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직접지원	최대 4건	1억원	70%	60%	50%

자료: 중소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동 사업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이내로 장기간이고, 참여기업 중 지원 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사업 기간 연장도 허용됨²⁰⁾.

참여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인증획득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가로 편성된 100억원이 연도 내 집행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처럼 연도 내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인증획득이라는 성과의 도출도 수월하지 않은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하여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최근의 통상 환경 악화에 따라 동 내역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점²¹⁾, 관세리스크 회피 목적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20)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0호]

제13조(협약의 체결) 참여기업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①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2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참여기업 경쟁률은 3:1 내외였으나, 최근 통상 환경이 악화된 이후 예년에 비해 약 30% 가량 경쟁률이 상승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경쟁률) (2023년) 3.1:1 → (2024년) 3.2:1 → (2025.4월) 4.2:1

는 해당 국가의 인증획득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동 내역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기간이 장기간이고 연도 내 집행도 쉽지 않다는 점과 함께 관세리스크 회피를 위한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인증획득 및 이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동 내역사업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인증획득 완료 및 예산의 실질적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수요를 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I.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현계획 대비 6.1%인 7,000억원이 증가한 12조 2,595억원임.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규모 변경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당초	변경	당초	현계획 (A)	변경안 (B)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1,138,894	11,410,110	11,559,453	11,559,453	12,259,453	700,000	6.1

수입계획 변경안은 융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타민간차입금 7,000억원임.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수입계획 변경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
	당초	변경	당초	현계획 (A)	변경안 (B)		
[중진기금]	11,138,894	11,410,110	11,559,453	11,559,453	12,259,453	700,000	6.1
기타민간차입금	4,549,838	4,819,838	4,523,150	4,523,150	5,223,150	700,000	15.5

지출계획 변경안은 총계 기준으로 현계획 대비 6.1%인 7,000억원이 증가한 12조 2,595억원이며, 총지출 기준(정부내부지출, 차입금원금상환 제외)으로는 현계획(6조 2,291억원) 대비 11.2%인 7,000억원이 증가한 6조 9,291억원임.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
	당초	변경	당초	현계획 (A)	변경안 (B)		
[중진기금]	6,339,701	6,610,917	6,229,066	6,229,066	6,929,066	700,000	11.2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50,000	235,000	250,000	250,000	750,000	500,000	2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융자)	189,370	234,370	382,450	382,450	482,450	100,000	26.1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	-	-	-	-	100,000	100,000	순증

주: 총지출 기준(정부내부지출, 차입금원금상환 제외)

Ⅱ. 검토의견

1.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261-302)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999~, 융자)은 재해 피해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5,000억원(200.0%) 증액한 7,50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B-A)/A
	당초	변경	당초 (A)	변경안 (B)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50,000	235,000	250,000	750,000	500,000	200.0

□ 검토의견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관리 철저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해 피해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10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최대 5년간 융자(거치기간 2년 이내) 지원하는 사업²²⁾임. 동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의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대규모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액 2,500억원 대비 200.0% 증액(5,000억원 증액)한 7,500억원을 계상함.

2025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도 당초 계획 산출내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내역
○ 기타민간융자금(450-04): 250,000백만원 · 1,563개사 × 160백만원('21~'23년 평균지원금액)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750,000백만원 · 4,688개사 × 160백만원('21~'23년 평균지원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2)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중소기업 지원)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1.9%p(고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기업은 1.5%(고정)
기 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기 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25년 2사분기 현재 3.15%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한편, 전반적인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고용여건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증액을 통해 경영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증액된다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거나 재해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025년 3월말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초 계획액 2,500억원 대비 54.9%에 달하는 1,373억원의 대출신청이 있음. 따라서 증액편성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그 규모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점검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5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실적(3월말 기준)

(단위: 억원, 건, %)

구분	계획액 (A)	신청			지원결정			대출		
		건수	금액 (B)	비율 (B/A)	건수	금액 (C)	비율 (C/A)	건수	금액 (D)	비율 (D/A)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	769	1,373	54.9	691	944	37.7	735	1,039	41.6
- 일시적경영애로	2,500	343	731	54.9	290	534	37.7	298	548	41.6
- 재해중소기업		426	642		401	409		437	492	

자료: 중소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다음의 표는 최근 3년간(2022~202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신청은 2022년 4,928억 8,400만원, 2023년 3,309억 800만원, 2024년 3,168억 2,50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계획액 7,500억원에 비해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2022~2024)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계획액	신청			지원결정			대출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2022	360,000	2,507	492,884	136.9	2,387	364,810	101.3	2,361	360,000	100.0
2023	258,900	1,575	330,908	127.8	1,488	255,700	98.8	1,505	258,900	100.0
2024	235,000	1,331	316,825	134.8	1,246	246,323	104.8	1,190	235,000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매년 다르다는 점, 융자자금 증액이 추가적인 자금 소요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신청 실적 추이(자금 수요 추이)가 2025년도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액(2,500억원) 대비 200.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고자 한다는 점, 최근 3년간의 융자실적치(2022년도 3,600억원, 2023년도 2,589억원, 2024년도 2,350억원)의 2배에 달하는 7,5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철저한 집행관리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당초 계획액(2,500억원) 대비 200.0%의 계획액(5,0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고자 하는 동사업 관련 융자지원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한 취지가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1261-303)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2000~, 융자)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수출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설비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 글로벌화’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1,000억원(26.1%) 증액한 4,82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B-A)/A
	당초	변경	당초 (A)	변경안 (B)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융자)	200,500	245,500	382,450	482,450	100,000	26.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00,000	100,000	200,000	200,000	-	-
수출기업 글로벌화	100,500	145,500	182,450	282,450	100,000	54.8

□ 검토의견

(1)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집행관리 철저 등

동 사업 중 ‘수출기업 글로벌화’ 내역사업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²³⁾, 기술 수출 중소기업, 해외법인을 운영하는 중소기업²⁴⁾ 등에 자금을 지원²⁵⁾하는 사업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1,000억원(54.8%) 증액한 2,82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획액 증액을 통해 ‘수출기업 글로벌화’ 내역사업 자금지원 대상 기업 수를 당초 770개사에서 1,192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

2025년도 수출기업 글로벌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도 당초 계획 산출내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내역
○ 기타민간융자금(450-04): 182,450백만원 · 770개사 × 237백만원('21~'23년 평균지원금액)	○ 기타민간융자금(450-04): 282,450백만원 · 1,192개사 × 237백만원('21~'23년 평균지원금액)

자료: 중소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3)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24)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25) □ 수출기업 글로벌화 대출 조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25년 2사분기 현재 3.15%임.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은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의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동 내역사업에 당초 계획액(1,824억 5,000만원) 대비 1,000억원을 증액한 2,824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계획액(최종) 약 1,344억원(이차보전 제외) 대비 110.2%가 증액된 것임.

2024년도와 2025년도 1사분기의 동 내역사업 지원실적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금액 기준 대출신청 금액은 2024년 1사분기의 경우 1,038억원이고, 2025년도 1사분기의 경우 1,177억원으로서, 2025년도 1사분기의 대출신청 금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증가 정도가 약 139억원에 불과함.

2024년도, 2025년도 1사분기 지원실적 비교

(단위: 억원, 건, %)

구 분	계획액 (A)	신청			지원결정			대출		
		전수	금액 (B)	비율 (B/A)	전수	금액 (C)	비율 (C/A)	전수	금액 (D)	비율 (D/A)
'24. 1사분기	1,344	376	1,038	77.2	349	762	56.7	338	726	54.0
'24년 누적	1,344	661	1,719	127.9	638	1,345	100.1	638	1,344	100.0
'25. 1사분기 (변경계획안기준)	1,825 (2,825)	448 (448)	1,177 (1,177)	64.5 (41.7)	395 (395)	897 (897)	49.2 (31.8)	383 (383)	839 (839)	45.9 (29.7)

자료: 중소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025년도 수출기업 글로벌화 내역사업 지원실적(3월말 기준)

(단위: 억원, 건, %)

구분	계획액 (A)	신청			지원결정			대출		
		건수	금액 (B)	비율 (B/A)	건수	금액 (C)	비율 (C/A)	건수	금액 (D)	비율 (D/A)
수출기업 글로벌화	1,825	448	1,177	64.5	395	897	49.2	383	839	45.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금신청 및 지원 결정이 1사분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2025년도 당초 계획액(1,824억 5,000만원)이 전년도 계획액(최종, 이차보전 제외 1,344억원)보다 약 481억원 증액 계상되어 있어 이와 같은 2025년도 1사분기의 자금 수요 증가에 상당부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을 통해 동 내역사업 계획액을 1,000억원 추가 증액한 것임.

2024년도 분기별 누적 지원실적

(단위: 억원, 건, %)

구분	계획액 (A)	신청			지원결정			대출		
		건수	금액 (B)	비율 (B/A)	건수	금액 (C)	비율 (C/A)	건수	금액 (D)	비율 (D/A)
'24년 1사분기	1,344	376	1,038	77.2	349	762	56.7	338	726	54.0
'24년 2사분기	1,344	422	1,129	84.0	404	865	64.4	402	849	63.2
'24년 3사분기	1,344	593	1,535	114.2	540	1,134	84.4	493	1,046	77.8
'24년 4사분기	1,344	661	1,719	127.9	638	1,345	100.1	638	1,344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한편,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중소기업이 통상 리스크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내용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융자)’을 한시사업(2025년도 한시사업)으로 신설하고, 동 신규사업에 1,000억원의 계획액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음. 즉, ‘수출기업 글로벌화’ 내역사업 자금 수요의 일부가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융자)’의 자금 수요로 대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²⁶⁾.

다음의 표는 동 내역사업(‘수출기업 글로벌화’)과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융자)’의 지원조건을 비교한 것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융자)’의 융자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고($\Delta 0.3\%p$), 융자기간 및 거치기간도 운전자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길게(1년) 설정되어 있음.

수출기업 글로벌화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의 지원 조건 비교

구분	수출기업 글로벌화 (1,000억원 증액)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000억원 신규 반영)
융자 한도	■ (운전) 10억원 이내 ■ (시설) 30억원 이내	■ (운전) 10억원 이내 ■ (시설) 30억원 이내
융자 기간	■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일부 3년 이내)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융자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융자 방식	■ 직접대출	■ 직접대출

주: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25년 2사분기 현재 3.15%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6)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융자)’의 경우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자동차, 알루미늄, 철강 등)의 2024년 지원기업 수 2,300여개 중, 조속한 집행 등을 고려하여 25%를 지원규모 산정하였다고 함.

물론, 통상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관련 자금 수요가 이전과는 달리 급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동 내역사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자금지원을 전년 대비 110.2% 증액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통상리스크 대응 목적의 신설 자금 지원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목적이 중복적인 것은 아닌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자금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년 계획액 대비 110.2% 증액하고자 하는 동 내역사업 관련 융자지원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증액 편성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융자)(1261-314)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융자)’(2025, 융자)은 미국 관세 품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과 같이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적(2025년도)으로 지원하려는 신규 융자사업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신규로 1,00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융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B-A)/A
	당초	변경	당초 (A)	변경안 (B)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융자)	-	-	-	100,000	100,000	순증

□ 검토의견

(1) 불확실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사 목적의 자금과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할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동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계획액의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2025년도 한시지원)으로 긴급자금을 투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용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내역
○ 기타민간융자금(450-04): 100,000백만원 (신규) · 565개사×177백만원 ('21년~'23년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시장진출지원자금 평균지원금액)

자료: 중소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기업²⁷⁾ 중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미국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²⁸⁾ 및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 등 총 565개사를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함.

27)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계획액 신속 집행 목적 달성 차원에서 피해사실 판단의 경우 전기(월, 분기, 연간 등) 대비 전전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함.

28)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미국에의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융자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10억원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30억원 이내로 설정하고, 융자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6년 이내(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4년 거치 6년 분할상환)로 하며, 융자금리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고시하고 있는 정책자금 기준금리(3개월 변동금리) 대비 0.3%p 낮게 설정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융자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융자) 지원 요건

구 분	융자 조건
융자한도	■ (운전) 10억원 이내, (시설) 30억원 이내
융자기간	■ (운전) 6년 이내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 10년 이내(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융자방식	■ 직접대출
기 타	■ 1년 만기연장 가능

주: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25년 2사분기 현재 3.15%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신규 융자 지원 방안은 미국 관세 품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과 같이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확충하려는 것으로서, 기금운용계획변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목적과의 부합성 모두 일정부분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세부사업으로 계획액을 계상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동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 수(지원 물량)를 총 565개사로 산정하였으나, 이러한 지원 물량은 그 수치를 산출한 근거가 합리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향후 추가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조치가 이루어질 경우를 선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점검이 필요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관세부과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인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2024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수(2,300여개사)를 지원 물량 산정에 고려하였으며, 계획액 조기 집행 등을 고려하여 이 중 25%에 해당하는 수치(565개사)를 지원 물량으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지원 물량 산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2024년도)와 달라진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업 수가 전년도(2024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지원 물량 산정에 적용된 25%가 적정한 수치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또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업종은 이미 관세 품목으로 발표된 업종으로, 향후 관세 품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앞에서 설명한 동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크지 않고,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같이 신규 융자사업 신설을 통한 사업 추진방식이 오히려 사업간 칸막이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일례로 동 사업과 비슷한 목적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증액(1,000억원 증액) 편성된 ‘수출기업 글로벌화’(‘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의 내역사업)의 지원 요건과 비교하면, 융자한도는 운전자금 10억원 이내와 시설자금 30억원 이내로 동일하고, 융자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만 동 사업(‘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이 1년 더 길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시설자금의 경우 큰 차별성이 없으며, 융자방식은 두 사업 모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수출기업 글로벌화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의 지원 요건 비교

구분	수출기업 글로벌화 (1,000억원 증액)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000억원 신규 반영)
융자 한도	■ (운전) 10억원 이내 ■ (시설) 30억원 이내	■ (운전) 10억원 이내 ■ (시설) 30억원 이내
융자 기간	■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일부 3년 이내)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융자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융자 방식	■ 직접대출	■ 직접대출

주: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25년 2사분기 현재 3.15%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동 사업(‘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의 융자금리가 ‘수출기업 글로벌화’보다 0.3%p 더 낮다는 점은 동 사업의 융자 지원을 받게 될 기업

에게 상대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일부 용자조건에서의 차별적 지원은 반드시 신규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일례로,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지원대상과 용자조건을 일부 달리한 지원유형을 신설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한정된 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것임.

특히, 앞에서 언급(“첫째” 부분)한 것처럼 동 사업(‘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의 지원 물량은 그 수치를 산출한 근거가 합리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향후 추가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경우를 선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소요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²⁹⁾.

요약하면, 동 사업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없진 않으나, 지원 물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불확실한 타국의 관세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신규 용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9)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일정한 경우 자체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일정한 행정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자금 배정 및 조속한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I.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현계획 대비 56.8%인 4조 247억원이 증가한 11조 1,107억원임.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규모 변경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
	당초	변경	당초	현계획 (A)	변경안 (B)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508,489	7,508,489	7,085,996	7,085,996	11,110,657	4,024,661	56.8

수입계획 변경안은 총계 기준으로 현계획 대비 4조 247억원(56.8%) 증가한 11조 1,107억원임.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계획 변경안

(단위: 백만원)

목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
	당초	변경	당초	현계획 (A)	변경안 (B)		
[소진기금]	7,508,489	7,508,489	7,085,996	7,085,996	11,110,657	4,024,661	56.8
일반회계 전입금	1,635,049	1,635,049	1,526,924	1,526,924	3,509,855	1,982,931	129.9
기금예수금	2,597,138	2,597,138	1,824,354	1,824,354	2,324,354	500,000	27.4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	-	-	1,541,730	1,541,730	순증

지출계획 변경안은 총계 기준으로 현계획 대비 56.8%인 4조 247억원이 증가한 11조 1,107억원이며, 총지출 기준(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제외)으로는 현계획(5조 3,213억원) 대비 75.4%인 4조 147억원이 증가한 9조 3,360억원임.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당초	변경	당초	현계획 (A)	변경안 (B)		%
[소진기금]	5,051,028	5,051,028	5,321,321	5,321,321	9,335,982	4,014,661	75.4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125,354	125,354	210,940	210,940	544,377	333,437	158.1
소상공인성장지원	292,498	279,212	265,085	265,085	1,962,421	1,697,336	640.3
소상공인재기지원	166,308	179,594	274,806	274,806	324,194	49,388	18.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22,796	422,796	465,205	465,205	1,899,705	1,434,500	308.4
소상공인지원 (융자)	3,710,000	3,710,000	3,770,000	3,770,000	4,270,000	500,000	13.3

주: 총지출 기준(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제외)

Ⅱ. 검토의견

1.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1234-303)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2004~, 출연)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원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30%~80%)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실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3,334억 3,700만원 (158.1%) 증액한 5,443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B-A)/A
	당초	변경	당초 (A)	변경안 (B)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125,354	125,354	210,940	544,377	333,437	158.1

□ 검토의견

(1)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안정적 수행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재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회계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총 예상 지출에서 총 예상 수입을 차감한 부족 금액을 정부 재원으로 보전(수지차 지원방식)하는 사업임.

지역신용보증제도 개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산불 피해기업 지원 및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해 보증규모를 당초 41조원에서 43조원으로 2조원 확대³⁰⁾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당초)에 반영된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3.36%를 4.68%로 현실화³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30) 즉, 2025년도 상반기 보증수요 증가(2조원)에 따른 재보증한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국내 경제상황 악화(산불피해, 무역분쟁으로 인한 원자재·물가상승 등)로 인해 소상공인 자금수요가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 획	결 산	당초 계 획	계 획 변경안	산출근거
☐ 보증잔액	410,000	427,917	410,000	430,000	신규공급 2조 확대에 따른 보증잔액 증액
☐ 재보증잔액 (A)	220,867	227,885	220,498	231,254	재보증비율 '23년 결산치 적용(53.78%)
☐ 손실보전금 순지급율(B)	1.79%	5.34%	3.36%	4.68%	'23년~'24년 손실보전금 순지급율 가중평균치 ('23: 3.36%, '24 :5.34%)
☐ 지 출(C)	4,041	12,291	7,506	10,920	-
• 손실보전금 (A×B)	3,954	12,175	7,409	10,823	재보증잔액(A)×순지급률(B)
• 관리비용 등	87	116	98	98	'23년 결산치 적용
☐ 수 입(D)	2,787	5,571	5,471	5,551	-
• 재보증료	1,789	1,675	1,632	1,711	'23년 결산치 적용 (재보증잔액의 0.74% 적용)
• 금융기관 출연금	596	1,184	1,472	1,472	'23년 출연금 결산치(645억원),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향 및 금융회사출연금 배분 비율 조정 반영
• 운용수익	275	306	514	514	'23년 결산치 적용
• 기타수익	127	2,406	1,853	1,853	'23년 결산치 적용(119억원) 및 새출발기금 매각 회수금 ('25년 추정치) 반영
☐ 수지차 (D-C)	△1,254	△6,720	△2,035	△5,370	-
☐ 정부출연금	1,254	1,254	2,035	2,035	-
☐ 당해연도 수지차	-	△5,466	-	△3,334	증액소요분

자료: 중소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31)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실측치가 2024년도 5.34%, 2025년도(3월말 기준) 6.55%로 2025년도 기금운
용계획(당초)에 반영된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3.36%보다 높아 기본재산 충당이 필요하다고 함.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증액 사유를 분석해보면, 전체 증액분 약 3,334억원 중 ① 보증규모 2조원 추가 확대에 따른 예상 수지차 변동 대응을 위해 약 281억원³²⁾을 증액하고, ② 순지급률 현실화에 따른 예상 수지차 변동 대응을 위해 약 3,053억원³³⁾을 증액한 것으로 추정됨.

이 중 “② 순지급률 현실화에 따른 예상 수지차 변동 대응분(약 3,053억원 증액분)”은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민생회복 지원이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물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위변제금 보전 등 재보증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기본 재산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2024년도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실제 수치(결산수치) 5.34%가 당초 계획상 수치 1.79%를 3.55%p 초과하여 당초 예상보다 8,000억원 이상

32) ① 보증규모 확대에 따른 손실보전금 예상치 증가분: 361억원

[추정근거: 보증규모 확대분 2조원 × 예상 재보증비율(53.78%, 2023년 결산수치 적용) ×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예상치(3.36%, 2023년 결산수치 적용)]

② 보증규모 확대에 따른 재보증료 수입 예상치 증가분: 80억원

[추정근거: 보증규모 확대분 2조원 × 예상 재보증비율(53.78%, 2023년 결산수치 적용) × 재보증료율 예상치(0.74%, 2023년 결산수치 적용)]

③ 예상 수지차 변동분: 수입 증가예상분(②) - 지출 증가예상분(①): △281억원

④ 수치차 악화에 따른 추가 정부출연 필요분: 281억원

33) ① 순지급률 현실화에 따른 손실보전금 예상치 증가분: 3,053억원

[추정근거: 보증잔액 43조원 × 예상 재보증비율(53.78%, 2023년 결산수치 적용) ×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현실화분(1.32%p, 당초 3.36%에서 4.68%로 변경 적용)]

② 예상 수지차 변동분: 수입 증가예상분(해당없음) - 지출 증가예상분(①): △3,053억원

③ 수치차 악화에 따른 추가 정부출연 필요분: 3,053억원

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그 결과 2024년말 기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회계 기본재산이 210억원 수준으로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5년도(3월말 기준)에도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실제 수치가 6.55%에 달하여 당초 계획상 수치 3.36%를 3.19%p 초과함에 따라 당초 예상을 초과한 손실보전금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말 기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회계 기본재산의 자본잠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부출연금 지원이 시급한 측면도 인정됨.

다만, 동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편성방식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수치차 예측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회계 기본재산이 수천억원 가량 적립되어 있기도 하고, 금번의 경우와 같이 기본재산의 자본잠식 상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자금운용의 비효율성 및 사업수행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즉, 정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회계의 예상지출액과 예상수입액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치차 예측 및 동 사업 계획액³⁴⁾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2년 전 결산 수치를 그대로 적용³⁵⁾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액 산정 방식은 경기가

34) 당해연도 총 예상 지출에서 총 예상 수입을 차감한 부족 금액을 보전

호황기일 때는 과도한 정부출연금 지원을 하게 되고 경기가 불황기일 때는 상대적으로 과소한 지원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급격한 경기변동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적립된 기본재산의 경우 수익성보다는 유동성 유지를 위한 단기 상품 위주의 운용이 불가피하며, 대위변제금 보전 수요가 급증할 때에는 이에 대응할 기본재산 구축이 오히려 불충분하게 되는 불안정성이 유발되는 것임.

따라서 정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을 통한 민생회복 지원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회계의 예상지출액과 예상수입액의 산출방식 및 동 사업 계획액의 편성방식을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35) 일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2023년도 결산수치를 적용

2.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소상공인성장지원’(2006~, 직접·보조)은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 및 컨설팅, 조직화·협업화,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1조 6,973억 3,600만원(640.3%) 증액한 1조 9,624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소상공인성장지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B-A)/A
	당초	변경	당초 (A)	변경안 (B)		
소상공인성장지원	294,625	281,339	265,085	1,962,421	1,697,336	640.3
소상공인역량강화	21,542	21,542	240,674	240,674	-	-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7,416	7,416	2,221	2,221	-	-
소상공인협업활성화	11,540	11,540	11,540	11,540	-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427	427	-	-	-	-
지역상권역량강화	1,700	1,700	-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252,000	238,714	-	-	-	-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	-	-	10,650	10,650	-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한시)	-	-	-	1,565,980	1,565,980	순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한시)	-	-	-	131,356	131,356	순증

□ 검토의견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한시): 조속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대규모 한시적 소액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필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한시)’ 내역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하여 크레딧(충전금액 개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1조 5,659억 8,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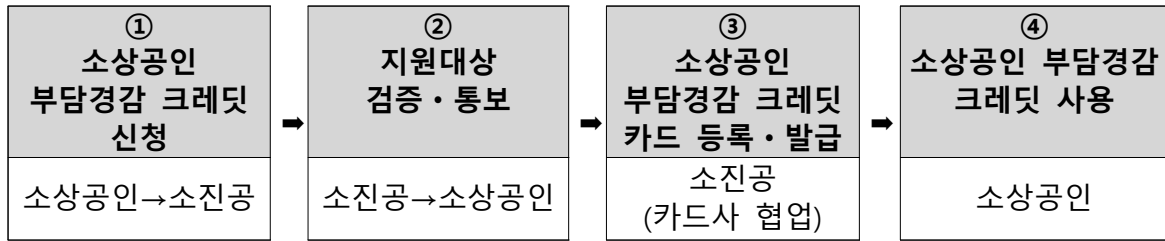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한시)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311만 1천명
- (지원단가)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 한도
- (지원방법) 크레딧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등록·발급한 카드에 크레딧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이 한도 내에서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등 납부 시 차감하여 사용
- (소요예산) 1조 5,659억 8,000만원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동 사업의 내용은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충전금액 개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방식은 크레딧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등록·발급한 카드에 크레딧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이 한도(업체당 50만원) 내에서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등 납부 시 자율적으로 차감하여 사용하는 방식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한시) 사업 추진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1천명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 및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³⁶⁾의 매출액 기준이 연 3억원 이하인 점을 참고하였다고 설명함. 구체적으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419만 3천명) 중 신생기업 등을 제외한 366만명에 대하여 예상 지원율(85%)³⁷⁾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규모를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지원단가를 업체당 5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소상공인의 월 고정비용(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지출액이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여기에 사업 수행기간(5개월 예상)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함.

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연간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하여 카드 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4% 이하
-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00% 이하
-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5% 이하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45% 이하

(출처: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https://gongsi.crefia.or.kr/>))

37)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율을 참고하여 지원율을 85%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다만,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부 산출근거에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신청·접수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임차 비용 104억 6,600만원과 관련 협의 및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용도로 사업추진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1,40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바, 동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3개월 예상)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크레딧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수행기간을 5개월로 상정하였다고 하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 수행기간이 순연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2025년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한시) 내역사업 산출근거

구분	산출근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한시)	○ 국내여비(220-01): 11백만원 - 사업 수행기관 및 정보 연계, 현장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협의 (3명*2회*4주*8개월*5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3백만원 - 사업 시스템 구축 등 관련 협의 1.5백만원(10명*5회*30천원) - 의견수렴을 위한 소상공인 협단체 간담회 등 1.5백만원 (10명*5회*3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1,565,966백만원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1,555,500백만원 (3,111,1000명*500천원) - 신청·접수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임차 비용 등 10,466백만원 (1식*10,466,000천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사업의 수혜자인 소상공인 입장에서 중요한 사용처와 관련하

여 중소기업부는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인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³⁸⁾이라는 동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 취지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동 사업은 중소기업부가 2024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2,520억원) 및 2025년에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2,037억원)과 지원목적(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 지원대상(다수의 영세 소상공인), 지원방식(신청주의 방식의 한시적 소액 지원) 및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유사한바, 종전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126만명)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신청 부진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탓에 지원대상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거나 지원단가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계획액이 감액³⁹⁾되기도 하였음.

38)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중기부 ‘25년 추경예산안 5조원 편성”, 2025.4.18.

2024년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급대상 등 변화 추이

구분	공고일	전년도 매출액 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 수 (추정)	지원단가
개시	2024.2.15.	3,000만원 이하	126만 5,000명	최대 20만원
1차 변경	2024.7.8.	6,000만원 이하	198만 7,000명	
2차 변경	2024.9.2.	1억 400만원 미만	258만 3,000명	
3차 변경	2024.11.1	1억 400만원 미만	258만 3,000명	최대 25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67만 9천명에게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2025년 4월 15일 현재까지 지원건수는 3만 2천건, 계획액(2,037억원) 대비 집행행률은 5.2%(집행액 106억원)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 목적 아래 추진하는 한시적 소액지원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 부진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⁴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홍보 강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⁴¹⁾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기요금 지원이나 배달·택배비 지원과 같은 한시적 소액지원 방식

39)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1월에 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인한 점포철거비 지원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계획액(2,520억원) 중 132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타 세부사업 내 ‘희망리턴패키지’ 내역사업을 증액한 바 있음.

40)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택배비 내역을 사전 확보한 신속지급 대상에 대하여 2월부터 지원중이고, 4월부터 전체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므로 집행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부처별 IV)”, 2024.11., pp.556-561.

의 비용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음.⁴²⁾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 시 정부가 종전의 한시적 소액지원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또는 이러한 사업방식의 효과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종전과 유사한 성격의 대규모 한시적 소액지원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정부는 사업이 연내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한편, 국회가 2024년 12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⁴³⁾ 관련 시행령 개정⁴⁴⁾과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42)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 pp.217-221.

4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04호, 2025.7.22. 시행)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제2025-95호)은 정부가 공공요금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매출액 등 요건을 검토할 수 있고, 직접 지원 및 차감 또는 환급 등의 지원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소상공인재기지원’(2015~, 보조)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개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하여 폐업에서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 유도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493억 8,800만원 (18.0%) 증액한 3,241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소상공인재기지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B-A)/A
	당초	변경	당초 (A)	변경안 (B)		
소상공인재기지원	166,308	179,594	274,806	324,194	49,388	18.0
희망리턴패키지	151,300	168,386	245,010	294,398	49,388	20.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5,008	11,208	14,827	14,827	-	-
손실보상 한시지원	-	-	10,400	10,400	-	-
회복상담·채무조정 제도운영	-	-	4,569	4,569	-	-

□ 검토의견

(1)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지원 신속하고 내실있는 집행 준비 필요

‘희망리턴패키지’ 내역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경영개선 및 재취업·재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원스톱폐업지원’ 내내역사업에 42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위기·재창업희망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기사업화지원’ 내내역사업에 69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음. 두 사업은 모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임.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내역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내역

구분	현계획	변경계획안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120,000백만원 (=30,000건*4백만원)	162,451백만원 (=40,613건*4백만원)
재기사업화지원	73,750백만원 ①경영진단: 5,000건*1.25백만원 ②사업화교육: 6,000건*1.25백만원 ③사업화지원: 2,500건*20백만원 ④사업화PM지원: 2,500건*4백만원	80,688백만원 ①경영진단: 5,500건*1.25백만원 ②사업화교육: 6,250건*1.25백만원 ③사업화지원: 2,750건*20백만원 ④사업화PM지원: 2,750건*4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사업장을 임차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여 폐업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원활히 폐업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증가에 따라 점포철거비 지원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점포철거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증액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2024년에는 당초 목표(22,000건)를 초과하여 총 29,533건의 점포철거비 지원이 이루어졌음.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1)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2)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3)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자력 철거 시 지원 불가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	② 신청서류 검토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③ 점포철거 신청인 (철거업체 활용)	▶	④ 정산서류 제출 신청인	▶	⑤ 정산서류 검토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⑥ 비용지급 공단→ 신청인	▶	⑦ 현장점검 공단
---	---	--	---	--	---	---	---	--	---	--	---	-------------------------------------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2025.1.3.

2024년 지역별 점포철거비 지원실적

(단위: 건)

구분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	대전·충청	합계
지원 실적	5,719	5,346	3,727	2,873	3,755	5,004	3,109	29,53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사업화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개선전략 수립, 특화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에 각각 운

영되던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개선지원’과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창업지원’을 2025년부터 통합 운영하면서 도입된 1:1 전담 관리자(PM) 매칭에 대한 지원 수요가 증가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재기사업화지원 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용					
경영개선 사업화지원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1)2024.1.1. 이전 개업 및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2)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지원절차>				
		진단신청	Ⅰ경영진단	Ⅱ사전교육	Ⅲ선정평가	Ⅳ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자격검토	현장방문 재기진단 (3,500건)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 완료자)	사업화 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서류, 발표)	실전교육 (1,750건)	사업화 (밀착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 (1,750건)
	소상공인 → 주관기관	주관기관→ 진단 전문가→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상공인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상공인 ↔ 주관기관	
	'25.1.3.~ 2.20.	'25.1.3.~ 2.20.	'25.3.~	'25.4.~	최종선정 및 협약('25.4.~5.), 협약일~'25.11.14.	
재창업 사업화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1)재창업(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2)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3)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절차>				
		진단신청	Ⅰ재창업진단	Ⅱ사전교육	Ⅲ선정평가	Ⅳ재창업 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자격검토	현장방문 재기진단 (1,500건)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 완료자)	사업화 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서류, 발표)	실전교육 (750건)	사업화 (밀착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 (750건)
	소상공인 → 주관기관	주관기관→ 진단 전문가→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상공인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상공인 ↔ 주관기관	
	'25.1.3.~ 2.20.	'25.1.3.~ 2.20.	'25.3.~	'25.4.~	최종선정 및 협약('25.4.~5.), 협약일~'25.11.14.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2025.1.3.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는⁴⁵⁾ 가운데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보조하고 신속·안전한 폐업 후 성공적인 재창업을 통하여 소상공인이 재도전 및 재기할 수 있도록 선제적·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증액변경은 타당성이 있어 보임.

다만,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2025년 당초 계획액의 집행률이 4월 현재 16.1%로 다소 부진한데,⁴⁶⁾ 기금운용계획 증액변경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당초(30,000건) 대비 35% 이상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 모집 공고, 서류 제출·검토, 비용지급 및 현장점검 등 일련의 지원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에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2025년 점포철거비 지원 집행현황(4월)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계획액	집행액(집행률)	목표건수	신청건수	지원건수
점포철거비 지원	120,000	19,342(16.1)	30,000	26,989	6,38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사업화지원’의 경우 2025년 4월 현재 재기진단 및 사전교육 실적은 목표 대비 양호한 편으로 보이나, 아직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

45)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사업자는 98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13.7%(11만 9천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임(개인사업자 91만 1천명, 법인사업자 7만 6천명). 폐업률은 9.0%로 2022년(8.2%) 대비 0.8%p 상승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상승 전환하였음. 또한, 14개 업종 중 소매업(27만 7천명), 기타 서비스업(21만 8천명), 음식업(15만 8천명)순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업(16.2%), 소매업(15.9%) 같이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의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2024.12.)

46) 동 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건수와 지원건수 간 차이에 대하여,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이 완료된 후 비용 정산 및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건에 대한 점포철거비가 지원되기 전이라고 설명함.

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바,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대상 모집·신청 단계부터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화지원 단계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지원이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재기사업화지원 지원실적(4월)

(단위: 건)

구분	목표	신청	재기진단	사전교육	비고
경영개선	3,500	5,263	3,358	2,926	선정평가 진행 중
재창업	1,500	2,712	1,964	1,66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중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수정·추가 공고를 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당초 계획에 비하여 사업 수행기간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지원 등 사업 수행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희망리턴패키지 기금운용계획변경 사업 추진계획(안)

구분	추진계획(안)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5월)	추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수정 공고
	-(5~12월)	점포철거비 지원 자금 집행
재기사업화지원	-(5월)	추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추가 공고
	-(6월)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추진
	-(7~11월)	전담PM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추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재기사업화지원’ 및 ‘원스톱폐업지원’ 내 세부 지원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국회예산정책

처의 지적이 있었는바, 점포철거비 지원 시 별도의 경영진단 절차를 두고 폐업 여부를 판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거나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임.⁴⁷⁾

47)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2024.10. pp.456-458.

4.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2002~, 보조·출연·위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1조 4,345억원 (308.4%) 증액한 1조 8,997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증감 (B-A)	(B-A)/A
	당초	변경	당초 (A)	변경안 (B)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20,669	420,669	465,205	1,899,705	1,434,500	308.4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16,142	16,142	16,142	16,142	-	-
전통시장 홍보 및 조사평가	-	-	4,315	4,315	-	-
온누리상품권 발행	351,348	351,348	390,748	455,248	64,500	16.5
상생페이백	-	-	-	1,370,000	1,370,000	순증
특성화시장 육성	30,100	30,100	35,720	35,720	-	-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13,853	13,853	13,853	13,853	-	-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	-	4,427	4,427	-	-
전통시장 홍보	2,906	2,906	-	-	-	-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5,620	5,620	-	-	-	-
조사 및 평가	700	700	-	-	-	-

□ 검토의견

(1)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한 소비 활성화 효과 재검토 필요

‘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역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내내역사업을 신설하여 645억원이 증액되었음.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임.

2025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역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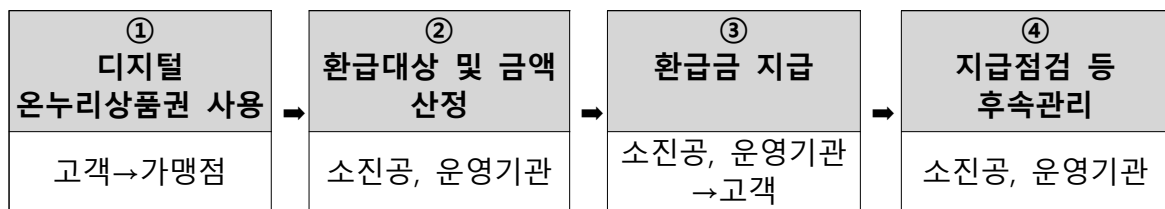
구분	현계획	변경계획안
온누리상품권 발행	390,748백만원	455,248백만원
	-(비할인판매, 지류) 0.8조원*발행·운영수수료 2.8% = 22,400백만원 -(5% 할인판매, 지류) 0.9조원* (발행·운영수수료 2.8%+할인율 5%) = 70,200백만원 -(5% 할인판매, 디지털) 2.3조원* (할인보전금 5%+발행·판매·회수수료 0.58%) = 128,340백만원 -(10% 할인판매, 디지털) 1.5조원* (할인보전금 10%+발행·판매·회수수료 0.58%) = 158,700백만원 -(기타운영비) 11,108백만원	(좌동)
	-	•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내내역사업) -(10% 환급행사) 월 12,900백만원 *5개월 = 64,5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내내역사업은 경기 악화 및 매출 감소 등으

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주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환급 회차별 인당 한도 있음)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5개월(5~9월)임.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사업 추진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설 명절을 전후로 한 달간(1.10.~2.10.)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하여 163억원의 환급 실적을 달성한 바 있고, 3월에는 ‘미리 온(ON) 동행축제’ 기간(3.17.~3.28.) 결제액의 최대 20%를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하여 103.2억원의 환급 실적을 달성한 바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사업이 종전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의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2025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개요 및 실적

구분	내용										
설 명절 특판 및 환급 행사 (2025.1.10.~ 2.10.)	○(행사목적) 설 민생경제대책 일환으로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벤트 실시 ○(행사내용) 할인을 상향, 결제액 환급, 할인쿠폰 행사 추진 - (환급행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최대 8만원, 총 4회 환급 행사 실시, 회차별 인당 2만원 한도 < 결제금액별 환급금액 예시 > <table><tr><td>결제금액</td><td>7,000원</td><td>67,000원</td><td>100,000원</td><td>140,000원</td></tr><tr><td>환급금액</td><td>1,000원</td><td>10,000원</td><td>15,000원</td><td>20,000원</td></tr></table> ○(행사실적) 설 특판 기간(1.10.~2.1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3,733억원 결제, <u>163억원 환급</u>	결제금액	7,000원	67,000원	100,000원	140,000원	환급금액	1,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결제금액	7,000원	67,000원	100,000원	140,000원							
환급금액	1,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미리 온(ON) 동행축제 환급 이벤트 (2025.3.17.~ 3.28.)	○(이벤트목적)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행축제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이벤트 실시 ○(이벤트내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최대 4만원, 총 2회 환급행사 실시, 회차별 인당 2만원 한도 ○(이벤트실적) 동행축제기간(3.17.~3.28.)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957억원 결제, <u>103.2억원 환급</u>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동행축제 기간 환급률(20%)과 환급실적(일평균 8.6억원)을 참고하되 환급 행사기간(5개월)을 감안하여 이번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증액 규모(645억원)를 산출하였다고 설명함.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사업 산출근거

- 월 환급액 12,900백만원 * 5개월 = 64,500백만원
- 25,800백만원(=860백만원*30일) * 1/2 = 12,900백만원
- *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환급률: 10%
- * 3월 동행축제 환급률 및 일평균 환급액: 20%, 86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한 결제액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

품권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내수 부진 및 온라인 중심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의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 및 방식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이라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점이 있음.

다만, 올해 3월까지 이미 두 차례 추진된 행사를 통하여 환급된 온누리상품권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된 다른 내역사업인 ‘상생페이백’ 사업의 내용 또한 1조 3,2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한 내수 활성화라는 점⁴⁸⁾을 감안할 때 반복적·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업의 효과성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 규모가 전년 대비 10% 증가⁴⁹⁾한 5조 5천억원이며 3월말 기준 발행액이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연내에 발행·판매될 온누리상품권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누적된 미판매·미회수액 규모가 1조 5천억원을 상회하는 점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⁵⁰⁾ 등도 함께 고려하면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환급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의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

48) ‘상생페이백’ 사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 점포에서의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증가한 2025년 소비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인당 30만원, 월 10만원 한도)해주는 사업으로, 계획된 환급 규모는 1조 3,200억원, 환급 대상은 600만명임.

49) 2024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은 5조원이었으며, 2024년 말 기준 발행액은 4조 2,880억원임.

50) 2024년 기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다음과 같음(영업 점포 수 249,442개 기준).

-지류(198,901개, 81.1%), 카드형(116,280개, 47.4%), 모바일(105,025개, 42.8%)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발행액	누적 발행액 (A)	판매액	누적 판매액 (B)	누적 미판매액 (A-B)	회수액	누적 회수액 (C)	누적 미회수액 (B-C)	누적 미판매+ 미회수액 (A-B)+(B-C)
2021년	31,573	156,331	31,721	149,323	7,008	33,809	143,034	6,289	13,297
2022년	35,391	191,722	27,034	176,357	15,365	25,260	168,294	8,063	23,428
2023년	20,242	211,964	28,537	204,894	7,070	30,563	198,857	6,037	13,107
2024년	42,880	254,844	43,092	247,986	6,858	39,692	238,550	9,436	16,294
2025년 3월	9,921	264,765	13,405	261,390	3,375	10,412	248,962	12,428	15,803

주: 디지털(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발행과 판매가 사실상 동시에 일어나므로 온누리상품권 미판매액은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발행(한국조폐공사 발행) 후 미판매액(금융기관의 미판매 보유분)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한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시행령 개정⁵¹⁾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 확대가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권 사용 비중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바,⁵²⁾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이 확대된 상황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의 소비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51) 정부는 2024년 9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의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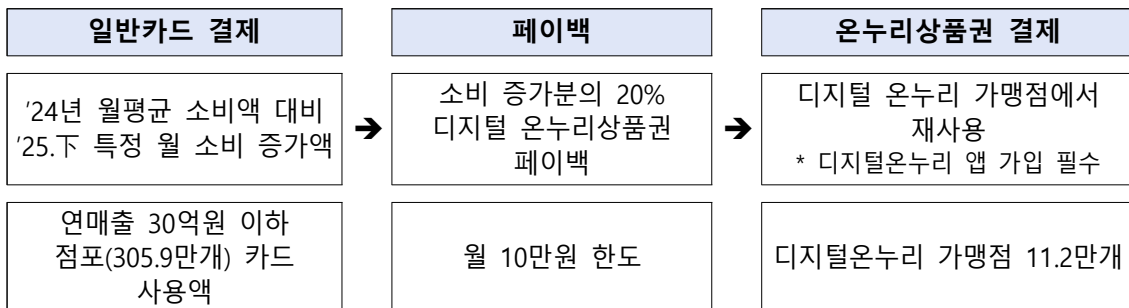
52)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 pp.232-238.

(2) 상생페이백: 조속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소비 유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설계 필요

‘상생페이백’ 내역사업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1조 3,70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임.

상생페이백(한시) 사업 개요

- (개요)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 소비액의 20%를 익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 '24년 월평균 대비 '25년 하반기 중 특정 월 소비 증가분
-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월 10만원 한도
- (대상소비) 부적합 업종(명품, 유흥업소, 대형마트, 차량 등)을 제외한 연 매출(카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의 국내 카드 사용액
- (예산) 1조 3,200억원 → 6조 6,000억원 추가 소비 유발 효과
 - * 온누리 상생소비지원금 투입예산 1조 3,200억원/20% = 6조 6,0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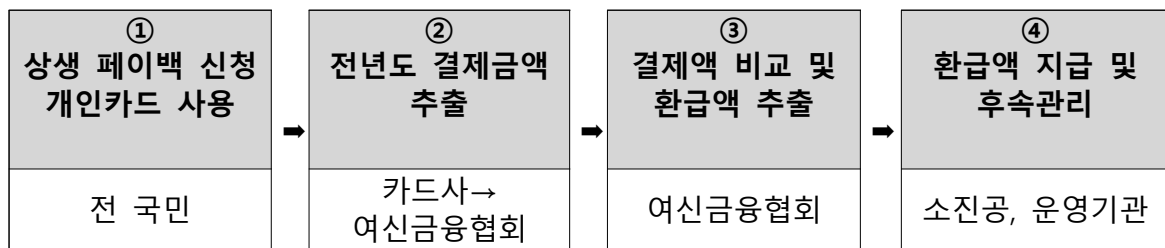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동 사업의 내용은 2025년 특정 월의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보다 증가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페이백)해주는 것으로, 소비자가 연 매출액(카드) 30억원 이하 점포에

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페이백을 신청하면 2024년 월평균 결제액과 비교하여 환급액을 결정한 후 지급하는 방식임.

상생 페이백(한시) 사업 추진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소비흐름의 개선 여부가 불확실한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내수 활성화 효과를 소상공인 등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고, 환급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동 사업으로 유발된 추가 소비여력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사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함.

2025년도 상생 페이백(한시) 내역사업 산출근거

구분	산출근거
상생 페이백 (한시)	○ 민간경상보조(320-01): 1,369,984백만원 -페이백 1,320,000백만원(0.22백만원*600만명) * '21년 상생소비지원금 2달간 1인 지원단가 7.33만원*환급률 2배*기간 1.5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 수수료 7,656백만원(1,320,000백만원*0.0058) -시스템 구축, 홍보비 등 42,32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12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14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점포에서 사용된 금액을 대상으로

환급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카드 사용금액 집계 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부 산출근거에는 환급액 1조 3,200억원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 수수료 76억 5,600만원 외에 시스템 구축 및 홍보비 423억 2,800만원과 사업추진비 및 여비 1,60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업무협의 등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에 지급되었던 ‘상생소비지원금’⁵³⁾의 1인당 지원액(7만 3,300원)에 환급률 2배(10→20%), 환급기간 1.5배(2→3개월)를 적용하여 동 사업의 1인당 지원단가를 22만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보고서⁵⁴⁾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의 1인당 평균 지원액은 47,880원인바, 동 사업의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작성된 것인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⁵⁾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관계 기관 업무협의 및 사업구조 설계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시스템 개발 등 사업 운영 인프라 구축과 대국민 홍보 등

53) ‘상생소비지원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2021년 10~11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임(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54) KDI,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효과 분석”, 2022.9.

55) 또한, 환급 지원대상을 600만명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전체 카드 사용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에 사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상생페이백(한시) 사업 집행계획(안)

구분	추진계획(안)
4월	관계 기관 업무협약, 구조 설계 및 세부계획 수립
5월	시스템 개발 등 관련 수행업체 모집 공고(필요시 지정 선정)
~8월	사업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사업 홍보
'25 하반기 중	지원금 지급 등 사업 운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동 사업은 2021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추진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⁵⁶⁾과 유사한 구조인바, 이번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시 관련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상생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1년 10~11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는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1,680만명에게 총 8,044억원⁵⁷⁾이 지급되었음.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하여 소비금액의 일부(10%)만 환급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재정 투입으로 큰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둘 수

56) 회계/기금: 일반회계,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세부사업(사업코드): 상생소비지원금(1136,301)

57) 2022년 1월에 지급한 지연매입분 포함 시 8,054억원

있고, 혜택을 현금이 아닌 카드포인트로 지급함으로써 후속 소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된 반면,

경제주체 입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변칙 소비행위⁵⁸⁾를 실행할 유인이 생김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무비용 필요로 행정비용이 소요되며, 소비금액에 따라 경제적 혜택이 증가하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역진성이 있고, 경제력과 무관한 요인에 따라 수혜 여부 및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⁵⁹⁾에서 형평성 논란 및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제시된 바 있음.⁶⁰⁾

참고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생소비지원금이 환급 대상 업종과 제한 업종 사이의 상대가격 조정⁶¹⁾을 특징으로 하며, 환급 대상 업종을 한정할 경우 특정 업종의 매출 회복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는 반면, 총 소비진작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고 보았음.

나아가 향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환급 대상 업종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총 소비진작 혹은 특정 업

58) ‘카드 사용 몰아주기’(평소 소비규모가 작은 가구원의 카드를 집중 사용), ‘결제취소 및 재결제’(2분기 고액 소비 건을 사후 결제취소 및 재결제), ‘11월 이후 소비 구축’(장기 보관이 가능한 생활필수품 대량 구매, 장기 시설·서비스이용권 구매 등을 앞당겨 소비) 등

59) 결제 수단에 대한 단순한 선호 차이에 따라 수혜 여부 및 규모가 달라지는 점(평소 현금 등을 사용하던 사람은 캐시백 지급에 필요한 소비금액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음) 및 돌발 소비요인 발생 등 우연적 요소에 의한 수혜 여부 및 규모가 달라지는 점(2분기에 우연히 이사, 질병 등 돌발 소비요인이 있는 사람은 이후 소비금액 확대가 곤란할 수 있음) 등

60)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부처별)”, pp.15-21.

61) 환급 대상 업종의 상대가격을 환급 제외 업종에 비해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환급 대상 업종의 소비는 증가하나, 제외 업종의 소비는 소득효과에 의해 증가할 수도 있고 대체효과에 의해 감소할 수도 있음.

종의 빠른 매출 회복 등으로 사업의 효과를 다각화할 수 있고, 업종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환급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음.⁶²⁾

‘상생 페이백’ 사업의 경우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것과 유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바,⁶³⁾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환급 대상/제외 업종 설정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진작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내수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정교하게 하여야 할 것임.

62) KDI,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효과 분석”, 2022.9., pp.72-73.

63) 가령, 정부는 1조 3,200억원 규모의 페이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환급률 20%를 적용하여 추가 소비 유발효과를 6조 6,000억원 규모로 제시하고 있으나,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보듯이 카드 사용자의 행태에 따라 소비 품목 간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카드 사용액 증가 규모가 산술적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을 것임.